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9-319호
- 예고기간 : 2009. 8. 18 ~ 9. 1
-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골자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전력 한전직거래 범위 확대(안 제19조제1항제2호)
 - 기존 200kW이하 소형발전소를 대상으로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 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위해 1,000kW로 확대하여 소형 발전소의 정부지원정책의 일관성 유지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안 제19조제4항제3호)
 -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 전력정책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안 제27조, 제28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전기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
- 점검기관의 사용전점검 대상설비 조정,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 추가 및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서비스 제공(안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2항, 제42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 전기설비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에 추가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

• 기술인력 변경 등록 업무 담당기관 변경(안 제62조제4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이 기술인력 변경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전력 기술인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변경등록 사무를 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신청인의 편의 도모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 허가 조건 완화(안 제53조제1항)

-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시 용량과 상관없이 허가를 면제(기존 3,000kW 범위내에서 허가 면제)하여 유휴부지 활용 및 공익단축

• 구역전기사업자의 조기 수요 발생시 전력거래 추가(안 제17조의2제3호)

-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내 전력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안 제22조의2제3호)

-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업무를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도록 함

• 제조업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안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저압 200킬로와트 미만의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종과 심야전력에서 모든 설비로 확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터널군 통합관리센터」에 한하여 4개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을 허용

• 자가용상용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허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 전기설비 범위 확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조정 및 추가(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제2항)

- “미만”, “이하”로 되어있는 전기수용설비의 대행가능 용량에 대한 기준을 “미만”으로 공통 적용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설비의 용량범위를 확대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안 제45조제1항, 제2항)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처리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태양광발전설비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5)
 - 태양광·연료전지발전설비 중 보호계통 및 기존설비와의 호환성 등의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의 교체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제출서류 보완·추가, 풍력발전소의 사용전점검 시기 조정(안 제29조 관련 별표8, 제31조제4항 관련 별표9)
 -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시 기술적 측면의 설비 안전성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현황을 기재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 신재생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안 제32조제1항, 제2항 관련 별표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인 풍차,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안 제44조 관련 별표12)
 - 복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명문화하며,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계설비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추가
- 사고조사 대상 전기설비의 확대 조정(안 제50조의3제1항 관련 별표19)
 - 10만볼트 이상 자가용전기설비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기설비 사고의 경우 중대한 사고에 해당됨을 규정
-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5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제36호, 제38호, 제38호의2, 제39호 서식)
 - 다른 법령 인용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며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표시

※ 자세한 사항은 행정 홈페이지 www.kraa.or.kr 알림마당---인원 및 개황의 최신피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09-702호
- 예고기간 : 2009. 8. 4~25
- 담당부처 : 건축기획과(02-2110-6202)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지하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층 창고에는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시에 규정된 내화구조 기준을 법령에 규정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1) 현재 국토해양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규정된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을 법령에 직접 규정

나.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 (1)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다. 피난계단의 방화문 성능기준 개선

- (1)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과 감종방화문으로 일원화하여 방화문 성능기준 향상으로 화재의 안전성 확보함

라. 피난계단 옥상 출입문의 기준 개선

- (1) 화재발생시 옥상광장을 통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게 되어 화재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마. 옥상광장에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 규정

-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바.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마련

-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사. 지하층 창고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 (1) 물류창고의 화재확산방지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668호
- 공포일자 : 2009. 8. 5
- 담당부처 : 건축기획과(02-2110-6206)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43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되,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59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사항

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신설)

- 1) 법률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의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함

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안 제91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요건(안 제119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 유권해석

이

주택감리업자 지정내용

- 감리업자지정 2007. 11. 22, 감리계약체결 2007. 11. 30
- 공고당시 전기공사기간 및 감리기간 : 2008. 4. 1~2010. 4. 30

질문 1) 주택감리업자로 지정받고 발주자사유로 계약을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2) 위의 경우 참여감리원을 다른 PQ에 참여 가능한지

질문 3) 위의 경우 참여감리원 변경사유 발생시 감리원교체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질문 4) 발주자사유로 공사착공 지연시 감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 착수예정일 1년이후 감리업무를 포기한다면 감리대가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정산받아야 하는지

질문 5) 발주자 사유로 3월이상 공사착공지연 및 공사중지시 감리업무를 포기하지 않고 건축분야처럼 감리지정권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타용역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제방안 마련요청

- 당초 모집공고된 전기공사 착공예정일(2008. 4. 1)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지연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PQ의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 PQ고시 제13조제2항에 공동주택의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전에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3. 31)

02

'07년 평택시가 공고한 슬기슬아파트 감리용역에 낙찰되었으나,
'08년 2월 21일 감리업체에서 퇴사할
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점적용 여부

- PQ고시 [별표 3]제1호바목의 개정(2007. 12. 31 시행 2008. 1. 에 따라 교체빈도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고시 개정 이전에 선정된 감리업자는 해당 시·도지사의 재 통보자료(기초자료)부터 감리원의 교체빈도가 적용됩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 시의 재 통보와 협회의 감리원 퇴사신고 일자가 동일한 경우로써 교체빈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2)

03

전력기술관리법과 전기사업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고 공존된 것
양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14)

04

건설회사에 20년을 근무하고 10여년전에 협회에서 경력수첩을 특급으로 받았으나, 현재시점에서 감리원수첩은
고급으로 발급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전력기술인의 범위)과 별표2(감리원의 자격)의 개정(2006. 6. 22 시행 2006. 6. 24)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 등에 대하여는 고급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7년 6월 25일 전까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특급 감리원 자격을 신청해야 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급감리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4. 15)